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7일, 조정태의원 등 10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북극항로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와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으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조선·해양플랜트, 극지장비·기자재, 해양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등 연관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북극항로 자체뿐만 아니라 쇄빙선 건조, 극지용 선박·장비 개발, 북극권 자원개발 등 연관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북극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조선·에너지·관광·해양과학기술 등 민간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조선·항만·해양 분야의 산업기반과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

이에 북극항로 개방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산

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